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의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2항)

-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

(가정용, 일반용, 옥탕용, 전용공업용)

나. 위법한 과태료 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 범위를 최대 30%까지, 감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로 구체화한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